

『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양진오 의원 외 11명

2. 제안이유

- 노인인구 및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대한노인회 구미시 지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
-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노인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정책 대안을 강구하고자 구미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를 조례에 명문화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대한노인회 구미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비용을 보조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명시(안 제4조의2)
-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· 반영(안 제4조의3)
- 노인복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후 평가하고, 평가 결과를 4년마다 구미시 의회에 보고.(안 제4조의4 ~ 제4조의6)
- 노인 복지에 관련한 지원 시책 마련(안 제4조의7)
-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 등 자문 · 심의를 위해 노인복지정책 위원회의 설치(안 제4조의8)
-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구성 · 운영(안 제4조의9 ~ 제4조의13)

4. 참고사항

-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, 제5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노인인구 및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대한노인회 구미시 지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
-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노인 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정책 대안을 강구하고자 구미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를 명문화 하고자 함.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대한노인회 구미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지원 명시(안 제4조의 2)
-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수립·반영(안 제4조의3~제4조의 7)
-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(안 제4조의 8)등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범위 안에서 노인지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해 노인 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축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를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활동)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

1.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
2.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
3.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·운영
4.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
5.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
6.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·교육훈련·학술진흥·홍보출판·국제교류 등의 업무
7.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
8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
9.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
제3조(협조 및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·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생략)

제5조(비용의 보조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② 개인,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,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.